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8
----------	------

제출연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2025년 총액인건비 보장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부에서 확정통보한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51명 (7,876명 → 7,927명)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증 32명 (7,128명 → 7,160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9명 (742명 → 761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51명 (7,876명 → 7,927명)
 - 일반직 정원 조정: 증 32명 (7,125명 → 7,157명)
 - 5급 이하 소계: 증 32명 (7,040명 → 7,072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742명 → 761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691명 → 71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첨 1] 비용추계서

다.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타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2) 입법예고(2025. 3. 12. ~ 2025. 3. 24.)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별첨 3] 제외통보 확인서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4] 검토의견 통보서
- 7) 관계법규: [별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76”을 “7,927”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128”을
“7,160”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742”를 “761”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92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72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761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71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876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 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p> <p>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u>7,128명</u></p> <p>3. 교육전문직원 정원 <u>742명</u></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927명</u>----- -----.</p> <p>1. ----- ----- -----</p> <p>2. ----- ----- -----</p> <p><u>7,160명</u></p> <p>3. ----- <u>761명</u></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5%;">계</th> <th style="width: 10%;">시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교육 지원청</th> <th style="width: 15%;">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87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12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44</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87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5%;">계</th> <th style="width: 10%;">시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교육 지원청</th> <th style="width: 15%;">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7,92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7,15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44</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92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87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92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5급 이하 소계	7,072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742					특정직 계	761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691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710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2025년 총액인건비 보장인력* 배정(유보통합 추진 인력)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 일반직: 32명, 특정직 19명

- 이에 따른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로 추가 소요비용 추계 필요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인건비	4,937,243	5,085,360	5,237,921	5,395,059	5,556,910	26,212,494
	소계(b)	4,937,243	5,085,360	5,237,921	5,395,059	5,556,910	26,212,494
□ 총 비용(a-b)		△4,937,243	△5,085,360	△5,237,921	△5,395,059	△5,556,910	△26,212,494

※ 재원: 보통교부금

※ 비용추계 단가: 2025년 총액인건비 일반직 단가(81,675천원), 전문직 단가(122,297천원)

※ 비용추계 방법(51명 기준 5개년도 추계)

- 1차년도: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

- 2차년도~5차년도: 전년도 인건비 x 처우개선율 3% 적용(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향후 단가 및 처우개선율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

3.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558,410	1,608,747	1,660,709	1,714,350	1,769,724	8,311,940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558,410	1,608,747	1,660,709	1,714,350	1,769,724	8,311,94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전은산 주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류호찬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5. 3. 14.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제2조 안 제4조 관련 별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총액인건비 보강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이 주요 내용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이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07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전은산	전화번호	02-2282-864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5년 03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5년 03월 12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3월 12일

【별첨 4】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전은산 (02-2282-8644)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목소희, 박지만, 임종수, 정명화, 유현우, 여미애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2조 및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은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2025년 총액 인건비 보강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내용으로 정원 배정기준에 따른 조정 및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됨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안 동의

【별첨 5】

관 련 규 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 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